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연월일	2015. 2. .
발 의 자	윤영철 의원 외 8명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영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2.

발 의 자 : 윤영철, 권기만, 김복자
안장환, 안주찬, 양진오
정근수, 정하영, 한성희

1. 제안이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질문의 의의(안 제72조의2제1항)

나. 시정질문 방식 및 발언시간을 규정함(안 제72조의2제2항)

- 1문1답식(본질문, 보충질문 구분 없음)
- 질문시간 : 30분(답변포함)

다. 질문요지서 및 서면답변서 규정 조항 변경(안 제72조의2제3항)

- 조의 변경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71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72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 략) <u>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72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24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신 설></u>	<u>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u>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 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72시간(휴무토요일, 공 휴일 제외)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